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 수거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수거 등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제품 수거 등 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자가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거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03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제품 수거 등 계획서와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그 제출 절차 등을 정하고,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제품 수거 등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접수 권한 등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07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 후단”을 “법 제21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제5항 중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피보험자 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2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바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제56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

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장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774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4항 전단”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을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서명·날인하여야”를 “서명날인해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8항제3호”를 “법 제23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법 제23조제8항”을 “법 제23조제9항”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업무정지명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7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의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한다.